

義務保險下에서의 Coinsurance Clause에 對한 考察

吳 炳 泰
〈本協會 業務部 · 課長〉

目 次

- I. 前 提
- II. Coinsurance Clause
 - 가. 概 要
 - 나. 目 的
 - 다. 保險金 算出例
 - 라. 留意點
 - 마. 特殊建物の 時價 및 金融機關 關聯保險과의 關係
 - 바. 企業休止保險의 補償期間과 共同保險條項
- III. 結 論

I. 前 提

우리나라의 損害保險은 契約對象物이 從來 企業物件을 主軸으로 成長發展되어 왔으며, 企業保險分野는 大部分의 契約이 金融機關關係火災保險共同事務所(pool)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現在의 火協에 이어졌다. 오늘날 現代文明의 急速한 發展과 우리 經濟의 高度成長에 步調를 맞추어 保險事業도 놀라운 成長을 거두어 왔고,

이와 같은 急速한 發展과 成長에 따라 各種 새로운 危險이 끊임없이 수반되고 多種·多變化하게 되었으며, 많은 企業들은 危險管理의 必要性和 重要性을 再認識하고 그 機能을 強化하여 企業에 正式으로 特別한 部署(危險管理部나 保險部)를 設置하여 危險의 發見·分析評價 등의 危險에 對處하여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통한 企業 資產保護에 이르렀고, 保險者들도 各種危險을 效率의으로 擔保하기 위한 契約引受上의 技術의 科學的인 面에 重大한 課題를 안게 되었다. 한편 火協은 安全點檢에 의한 危險의 事前豫防과 危險測定 및 保險引受技術을 갖추어 關係保險을 取扱함으로써 先導防災와 保險情報機關으로서 開發의 機能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폭넓게 活用하여 保險業界의 保險引受의 資料 및 새로운 保險商品 개발과 特別히 適正料率算定에 기여함으로써 保險契約者에게 適正·適宜하고 公正하며 지나치게 差別的이 아닌 料率을 賦課하여 保險契約者의 利益을 保護할 使命을 또한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趣旨의 一環으로 우선 先進國의 企業財産保險에서 一般의으로 많이 使用되고 있는 Coinsurance Clause(共同保險條項)를 考察하고자 한다.

II. Coinsurance Clause

가. 概 要

共同保險條項은 주로 財産保險(損害保險)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被保險者가 保險目的物 價額의 一定比率以上을 保險에 들고 事故時에 保險金額이 그 比率以上일 때에는 損害額 全額을 補償받고 事故時 保險金額이 그 比率未滿일 때는 比例補償을 받는 것이므로 一名 付保比率條件附實損補償特別約款이라고도 한다. 例컨대 耐火構造나 防火區劃이 잘된 建物は 火災가 發生하더라도 大部分이 分損이지 全損될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에 被保險者는 建物價額 全額을 付保하면 保險料의 負擔이 過重하게 되어 全額付保를 꺼리게 되고 一部 保險으로 付保하게 되면 保險料의 負擔은 줄일 수 있으나 事故時에는 比例補償을 받게 되므로 充分한 실손補償을 期待할 수 없게 된다. 한편 保險者 立場에서 보면 全損이 發生할 確率이 거의 없기 때문에 保險者가 負擔할 危險이 該當建物價額의 全額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므로 被保險者로 하여금 保險料 負擔을 輕減시켜 줄 必要가 있게 된다. 따라서 被保險者로 하여금 一定率(例 80%)에 해당하는 保險金額을 維持하게 함으로써 保險料負擔을 줄여 주고(例 10억에 대한 保險料 대신에 80%인 8억에 대한 保險料만 負擔함) 事故時에는 保險金額이 保險價額의 一定率에 해당하는 限 損害額을 比例補償하지 않고 보험금액을 한도로 全額補償하는 것이다.

나. 目 的

保險契約者로 하여금 財産價値와 比較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그 價値에 가깝거나 同一한 價格으로 保險金額을 決定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즉 保險目的物 價値와 保險金額과의 比率의 低下를 防止하고 保險金額의 強化를 의도하는 것이다. 長期貯蓄性 損害保險의 80%付保比

率條件附實損補償은 保險期間이 長期이므로 장애의 保險目的의 價額을 正確하게 豫知할 수 없기 때문에 契約當時에는 全部保險이었으나 物價變動으로 인하여 罹災時에는 一部保險이 되어 契約者가 아주 不利益하게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함이고, 住宅保險이나 家庭生活保險이 事故時에 一定率(住宅保險은 80%, 家庭生活保險은 60%)以上 保險金額이 保險價額을 維持할 때 保險金額을 限度로 하여 損害額의 全額을 補償함은 一部保險에 대한 比例補償으로 인해 保險契約者의 保險에 대한 不信感을 갖고 無視하는 경우를 防止하고 保險의 底邊擴大 또는 保險料率의 間接의인 引下를 위함이라는 점에서 서로 相異하다.

다. 保險金 算出例

1억원의 價値가 있는 家屋에 대하여 保險契約者는 80%의 共同保險率을 擇하게 되면, 保險金額은 8천만원이고(100,000,000원×80%) 事故後 調査에 의하여 時價 1억원이라면 被保險者는 證券上에 表記된 保險金額 8천만원을 限度로 하여 損害額 全額을 補償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 保險金額이 必要金額(Amount of insurance required)에 未達할 경우에는 比例補償을 받게 된다. 損害額이 1천만원일 경우의 保險金은 다음과 같다.

(1) 必要金額을 充足했을 때

$$10,000,000 \times \frac{80,000,000 \text{원}}{100,000,000 \text{원} \times 80\%} = 10,000,000 \text{원 (保險金)}$$

(2) 必要金額을 未達했을 때

$$10,000,000 \times \frac{80,000,000 \text{원}}{120,000,000 \text{원} \times 80\%} = 8,333,334 \text{원 (保險金)}$$

(3) 必要金額을 充足하고 全損 또는 損害額이 保險金額을 超過할 때

$$100,000,000 \times \frac{80,000,000 \text{원}}{100,000,000 \text{원} \times 80\%} = 100,000,000$$

但 80,000,000원限度

즉 損害額 × $\frac{\text{保險金額}}{\text{共同保險比率}(\%) \times \text{罹災發生時價額}}$
 = 保險金
 支給保險金은 損害額이나 付保金額을 超
 過할 수 없다.

라. 留意點

Coinsurance Clause란 어떤 損害額을 保險者와 被保險者가 分擔한다는 뜻이 아니고 該當共同保險率以上으로 付保率이 事故時에 維持되면 損害額全額을 保險者가 補償하되 該當共同保險率未滿으로 付保率이 떨어지면(Required Amount에 未達하는 것) 그 떨어진 付保率만큼만 比例로 補償하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付保率이 떨어질 경우에만 被保險者는 比例補償을 받게 되므로 그 差額은 自己負擔이 되는 것이다(Under insurance Penalty).

結果적으로 태만하고 不注意한 保險契約者에게 페널티로써 責任이 賦課되는 것이다.

Coinsurance Clause는 生命保險이나 災害保險分野에서는 使用되지 않고 오로지 財産保險分野에서만 使用되며, 一般的으로 共同保險比率이 높아질수록 保險料率이 낮아진다. 즉 共同保險比率이 80%인 경우는 60%인 경우에 비하여 保險料率이 낮다는 말이다.

契約者의 要請에 의하여 近間에 使用한 S社의 例를 들어보면,

80% Coinsurance Clause; 0.2475%

60% Coinsurance Clause; 0.27%이다.

한편 이 條項은 契約者의 善意다 해도 만약 超過付保하였다면 더 많은 保險料를 내게 되고 또 一部保險이라면 그의 補償額은 감소되기 때문에 一部 財政的인 損失없이 이 條項을 遵守하는 것이 어렵다는 短點도 留意하여야 한다.

마. 特殊建物の 時價 및 金融機關 關聯 保險과의 關係

(1) 火保法 第8條 第1項 第1號에 “火災保險

은 特殊建物の 時價에 該當하는 金額”이라 하여 特約付火災保險은 「保險金額=保險價額(時價)」로써 法上으로는 契約成立時에 超過保險(Over insurance) 또는 一部保險(Under insurance)은 있을 수 없고 全額保險(Full insurance)으로, 被保險者가 입은 經濟的 損失을 補償한다는 理想的인 趣旨이다. 이에 따라 施行規則에 「特殊建物 時價決定基準額表」를 定하였고 工場의 機械設備 및 附帶裝置에 대한 評價方法은 「法人稅法 施行令의 規程에 의한 減價償却을 하고 이에 都賣物價 上昇率을 參酌하여 算定한 價額을 時價로 한다」고 明文化하였다(施行規則 第2條 第1項 但書). 그러나 千態萬別한 建物 및 多種·多樣하고 複雜한 機械의 適正時價算出의 困難과 物價變動, 一定한 基準時點等으로 時價와 基準額表上 價額間의 差는 不可避한 것이고, 現實적으로 지난 몇년간 基準額表의 補完이 없었으며 物價連動制의 採擇도 어려워, 罹災發生時에 比例補償이 不可避하게 되고 따라서 被保險者가 相當한 補償을 받지 못하게 되어 保險金 支給時마다 問題點이 야기되고 있는 實情이다.

上記의 現實을 감안하여 基準額表에 의한 保險金額에 一定率의 Coinsurance Clause를 適用함은 一種의 間接的인 時價補填方法이며 罹災時 實損補償에 의한 充分한 補償으로 被保險者의 好感과 同時에 本法 趣旨에도 符合될 것이다.

(2) 「保險契約의 引受는 嚴格하게, 保險金 支給은 厚하게」라는 保險經營의 警句같이 被保險者가 保險事故時에 滿足할 수 있는 保險金を 支給받을 수 있도록, 理想的인 損害補償을 期待하기 위해서는 契約引受時에 保險價額이 適正하게 評價되어 이에 相應하는 適切한 保險金額이 設定되어야 한다. 그러나 鑑定院이나 金融機關의 鑑定이 徵稅政策의 基礎나, 債權確保라는 金融業務上의 特性을 考慮한 것이기 때문에 保險價額의 評價資料로는 不充分하며, 火協의 金融關聯 高額物件에 대한 安全點檢을 實施하여 保險引受等 各種 保險資料로 活用하고 있으나 아직

未洽한 段階이고 특히 機械類는 그 種類가 많고 構造性能이 複雜多岐하므로 機械에 대한 專門家가 아닌 者가 評價하기에는 至難한 實情이다. 이와같이 保險價額 評價方法의 未定立과 保險引受技術이 未熟한 現實에서 하나의 補完策으로 一定率의 Coinsurance Clause의 適用은 바람직하며 事故發生時 保險金 支給問題로 被保險者와 의 對立이나 紛爭을 어느정도 緩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 企業休止保險의 補償期間과 共同保險條項

企業休止保險은 火災等 一定한 偶然的 事故에 의하여, 企業經營이 中止되거나 沮害된 結果로 생긴 損害中에서 그 事故發生이 없었더라면 計上될 수 있을 營業利益과 操業이 中斷된 期間 동안에도 繼續 支拂해야 하는 經常費를 補償하는 一種의 間接損害를 補償하는 保險이다. 企業休止補償期間에는 英國式·美國式 方法이 있다.

英國式에서는 企業休止損害를 一定한 期間 동안 補償하는 補償期間(Indemnity period)이 있다. 被保險者는 事故發生時에 그가 經營하는 企業을 正常狀態로 原狀復舊함에 必要한 것으로 豫想되는 補償期間을 選擇해야 하고, 이 補償期間은 損害를 당한 財産의 復舊와 企業經營의 收益을 復舊하는 兩面에 所要되는 期間이다. 保險金額은 Annual Gross Profit이고, 補償期間이 12個月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保險金額도 12個月을 超過하는 期間만큼 比例的으로 增額된다.

美國式 方法에서는 英國式的 補償期間이라는 것은 없고 그 代身 共同保險條項에 의하여 共同保險率(Coinsurance percentage)에 따라 12個月間을 補償한다.

美國式 企業休止의 補償期間은 事故發生時點

부터 迅速하게 復舊하는 데에 實際로 所要되는 期間이며, 12個月間이라는 約款上の 表現은 없으나 通常 12個月間으로 解釋適用한다.

共同保險率은 被保險者가 全損의 경우에 事故後 復舊하는 데에 所要될 期間을 推定하여 12個月에 대한 比率로 決定하게 되며, 決定된 共同保險率을 Annual Gross Earnings에 곱하여 保險金額이 策定되고 事故時에는 損害額이 이 保險金額에 達할 때까지 補償을 받게 되며 事實上 50% Coinsurance일 경우에는 대략 12個月의 50%인 6個月 정도가 경과되면 保險金額에 거의 到達하게 된다. 그러나 期間上으로는 6個月이 경과되더라도 그 동안에 發生한 損害額이 保險金額에 未達되면, 損害額이 保險金額에 達할 때까지 補償하는 것이다.

III. 結 論

保險을 危險管理側面에서 研究하려는 傾向이 뚜렷한 요즘 火協은 安全點檢에 의한 危險管理 및 保險情報機能을 最大限 利用하여 先導防災에 발맞추어 先導保險의 一翼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危險管理課(危險選擇課)의 設置가 必要하며 여기에서 保險對象物인 수많은 危險을 充分히 檢討하고 分析評價하여 保險引受等 各種 保險資料로 活用하고 나아가 保險業界에 寄與하여야 할 것이며, 獨占으로 인한 料率의 硬直性을 排除하기 위하여, F.O.C(Foreign)料率과 이에 따른 各種 特約條項들을 상세히 研究檢討하여 保險契約者의 要望에 適合하고 適正한 料率을 賦課함이, 保險契約者에 대한 서비스요, 保險認識 提高方案임은 물론 火協發展의 길이라 생각된다. *